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686

2026. 3. 25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3. 13. 박다미 의원 등 7인

나. 상정의결

- 제3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3. 25.)
  “수정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대표발의자 박다미 의원)

「지방자치법」 제75조는 지방의회 회의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, 감사·조사 과정에서도 공개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공개원칙 신설 (안 제10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5조

나. 예산조치: 논의 필요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최서용)

가. 조례개정 취지

○ 「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강남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 및 조사 과정의 공개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**박다미 의원**이 대표발의한 안건 임.

나. 검토내용

○ ‘지방의회 회의의 공개 원칙’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임.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**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** 다만,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○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별도의 감사 절차라기보다 지방의회가 보유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상임위원회가 행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로서, 상임위원회 회의의 한 형태

로 볼 수 있음.

○ 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임.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26조(주민에 대한 정보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지방의회의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,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(이하 "지방자치정보"라 한다)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**

○ 2026년 3월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'지방의회 회의의 공개 원칙'을 명시하고 있는 의회는 강동구의회와 금천구의회 2개 의회임.

【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】

제17조(공개원칙)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

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】

제7조의2(공개의 원칙)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○ 한편, 영등포구의회, 강동구의회, 강북구의회, 강서구의회, 광진구의회, 구로구의회, 금천구의회, 동대문구의회, 동작구의회, 마포구의회, 서초구의회, 성동구의회, 송파구의회, 양천구의회 등 14개 의회는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】

제9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의회에서 증언·진술을 하는 **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·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,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**

○ 현재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안전위원회, 경제도시위원회,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 장소를 ‘강남구청 감사장’으로 정하고,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 방법 및 장소를 결정하여 실시하고 있음.

○ 다만 감사 과정에서 방송이나 참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비공개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회의록,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‘최근 회의록’ 메뉴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.

○ 이를 종합하면 현재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사후적으로 일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, 조례 개정 취지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과정의 공개 확대는 **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,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 확보**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.

○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공개가 확대될 경우, 증인의 비공개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과 실비보상 관련 조문의 추가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.

< 신설검토 >

일부개정조례안	수정검토
<신 설>	제9조의2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의회에서 증언·진술을 하는 증인이 방송·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·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에 요구 장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○ 참고로 증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군사 · 외교 ·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국가 안위에 중

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「지방자치법」에서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음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인 ‘지방의회 회의의 공개 원칙’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 방송 및 참관 등 행정사무감사 공개 확대가 예상되는바,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장안에서녹음·녹화·촬영·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」의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아울러 현재 행정사무감사 장소인 강남구청 감사장의 공간 협소 문제와 방송·중계 설비 구축 등을 고려하여 강남구청 총무과와의 협의 등 현실적 여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의견

○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지방의회 회의의 공개 원칙’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의 한 형태인 행정사무감사를 공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,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 행정사무감사 공개 확대에 따라 출석 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

의 보호와 관련된 조문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 : “수정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